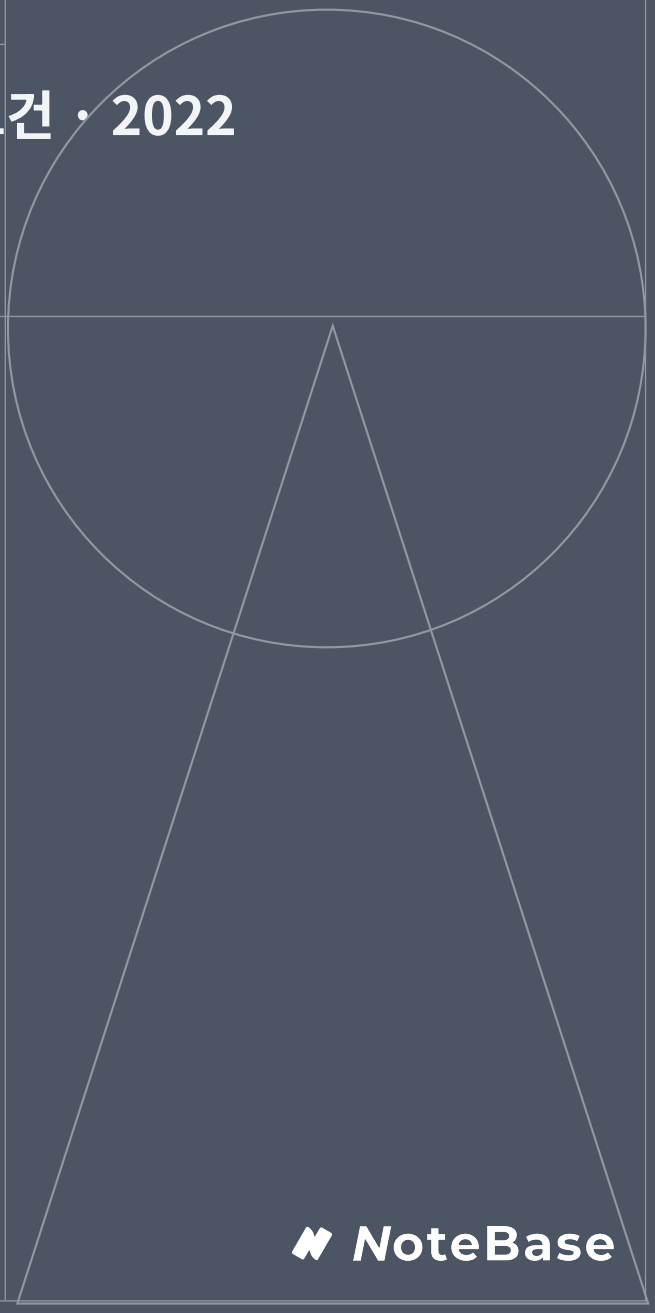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공중보건 · 2022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공중보건 · 2022

공무원/지방직/9급 · 공중보건 · 2022

문 1. 국민의 70%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된다면 나머지 30%는 접종하지 않아도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는 보건의료서비스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① 정보의 비대칭성

② 수요의 불확실성

③ 치료의 불확실성

④ 외부효과성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예방접종의 이익이 접종자 자신뿐 아니라 **접종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미치는 것**은 긍정적 외부효과이다. 집단면역으로 감염 전파가 줄어 비접종자도 간접적인 보호를 받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핵심 풀이

외부효과는 어떤 사람의 경제활동이 거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별도의 대가 없이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 현상이다. 예방접종으로 감염 전파가 줄면 접종자뿐 아니라 비접종자도 감염 위험이 낮아지는 이익을 얻는다. 이처럼 **접종의 편익이 제3자에게까지 미치는 것**이 보건의료서비스의 외부효과성이며, 이익을 주므로 긍정적 외부효과에 해당한다. 문항은 국민의 70%가 접종하여 집단면역이 형성된다는 조건에서 나머지 30%도 간접적으로 보호받는 상황을 제시한다. 여기서 70%는 문제에서 설정한 조건이며, 실제 코로나19의 집단면역 형성 기준을 일반화한 수치는 아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환자와 의료인 사이에 질병이나 진료에 관한 정보의 차이가 있는 특성이다. 수요의 불확실성은 질병 발생 시기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미리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뜻이고, 치료의 불확실성은 치료 결과를 확실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제시된 상황의 초점은 정보 차이나 예측의 어려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접종으로 비접종자도 편익을 얻는 관계**에 있다.

NoteBase

문 2. 인구집단의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 중 사회적 결정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노동과 고용조건

② 불건강한 생활습관

③ 소득불평등

④ 성과 인종차별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불건강한 생활습관은 흡연·과음·운동 부족처럼 **개인의 행동적 결정요인**에 해당한다. 생활습관 자체와 그 행동에 영향을 주는 고용·소득·차별 등의 사회적 조건을 구분한다.

선지별 해설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성장하며 생활하고 일하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말한다. 각 선지가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① O: 노동과 고용조건은 사회적 결정요인이다. **고용 안정성, 임금, 작업환경**은 생활에 필요한 자원과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정도를 좌우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준다.

② X: 불건강한 생활습관은 사회적 결정요인이 아니라 **개인의 행동적 결정요인**으로 분류한다. 흡연·과음·운동 부족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행동도 소득이나 노동환경의 영향을 받지만, 행동 자체와 그 배경이 되는 사회적 조건은 구분한다.

③ O: 소득불평등은 사회적 결정요인이다. 소득의 불균등한 분배는 **건강을 유지할 자원과 기회의 격차**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주거·식생활·의료 이용 여건에 차이가 생겨 인구집단 간 건강격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④ O: 성과 인종차별은 사회적 결정요인이다. 여기서 핵심은 생물학적 차이 자체가 아니라 **성별·인종에 따른 불평등한 대우**이다. 차별은 교육·고용·의료 이용 기회를 제한하고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NoteBase

문 3. 질병의 발생단계에 따른 예방 수준을 1, 2, 3차로 구분할 때,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계 감염병에 대한 2차 예방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① 예방접종

② 올바른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

③ 접촉자 추적을 통한 질병의 조기검진

④ 방역수칙 준수 등에 대한 홍보 및 보건교육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2차 예방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진행을 막는 활동이다. 접촉자를 추적해 검진하는 것은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찾아 질병을 일찍 발견하려는 활동이므로 2차 예방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1차 예방은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위험요인을 줄이거나 저항력을 높이는 활동이고, 2차 예방은 질병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통해 진행을 막는 활동이다. 이 기준으로 각 활동이 2차 예방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① X: 예방접종은 면역을 형성하여 질병의 발생을 막는 **1차 예방의 특이적 보호**에 해당한다. 이미 발생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2차 예방과 구별된다.

② X: 올바른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은 병원체에 대한 노출과 전파를 줄여 **감염 발생을 예방**하는 활동이다. 질병을 찾아내는 검진이 아니라 1차 예방에 해당한다.

③ O: 접촉자 추적을 통한 조기검진은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을 찾아 검사함으로써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려는 활동이다. 조기발견 후 신속한 치료로 질병의 진행을 막는 2차 예방에 해당한다.

④ X: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홍보와 보건교육은 사람들이 예방행동을 실천하도록 하여 **질병 발생 위험을 낮추는** 활동이다. 제시된 교육은 조기검진이 아니라 1차 예방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1급 법정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① 인플루엔자
② 유행성이하선염
③ 신종감염병증후군
④ 비브리오패혈증

정답 3번

①

인플루엔자는 **제4급감염병**에 해당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가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8, 2013.3.22, 2014.3.18, 2015.7.6, 2016.12.2, 2018.3.27, 2019.12.3, 2020.3.4, 2020.8.11, 2020.12.15, 2023.6.13, 2023.8.8>
5. "제4급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인플루엔자

②

유행성이하선염은 **제2급감염병**에 해당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카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8, 2013.3.22, 2014.3.18, 2015.7.6, 2016.12.2, 2018.3.27, 2019.12.3, 2020.3.4, 2020.8.11, 2020.12.15, 2023.6.13, 2023.8.8>
3. "제2급감염병"이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 · 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카.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NoteBase

③

신종감염병증후군은 **제1급감염병**에 해당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타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8, 2013.3.22, 2014.3.18, 2015.7.6, 2016.12.2, 2018.3.27, 2019.12.3, 2020.3.4, 2020.8.11, 2020.12.15, 2023.6.13, 2023.8.8>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 · 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④

비브리오패혈증은 **제3급감염병**에 해당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사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8, 2013.3.22, 2014.3.18, 2015.7.6, 2016.12.2, 2018.3.27, 2019.12.3, 2020.3.4, 2020.8.11, 2020.12.15, 2023.6.13, 2023.8.8>
4. "제3급감염병"이란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 · 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사. 비브리오패혈증

NoteBase

문 5. 지역사회보건사업평가 중 특정 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투입된 인력, 조직, 시설, 장비, 재정 등이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① 과정평가
② 구조평가
③ 결과평가
④ 영향평가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인력·조직·시설·장비·재정처럼 사업 수행에 필요한 **투입 자원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은 구조평가이다.

개념 구분

구조평가는 보건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과 자원이 적절하게 갖추어져 있는지**를 평가한다. 인력의 수와 전문성, 조직의 업무 체계, 시설·장비의 적절성, 필요한 재정의 확보 정도 등이 평가 대상이다. 문항에서 나열한 인력·조직·시설·장비·재정은 모두 사업 수행을 위한 투입 요소이므로 구조평가에 해당한다.

과정평가는 사업 활동이 계획대로 수행되는지 등 **실제 수행 과정**을 평가한다. 결과평가와 영향평가는 사업 시행으로 나타난 변화나 효과를 평가한다. 따라서 무엇을 갖추고 사업을 수행하는지를 보는 구조평가와, 어떻게 수행했는지 또는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보는 평가를 구분해야 한다.

NoteBase

문 6.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의 원인식품과 독소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바지락 – venerupin

② 감자 – solanine

③ 홍합 – tetrodotoxin

④ 버섯 – muscarine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③의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은 대표적인 **복어독**이다. 홍합에 축적되어 마비성 패류중독을 일으키는 대표 독소는 **삭시톡신(saxitoxin)**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베네루핀(venerupin)은 **바지락·모시조개·굴 등 이매패류**에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자연독이다. 따라서 바지락과 베네루핀의 연결은 적절하다.

② O: 솔라닌(solanine)은 감자에 들어 있는 자연독으로, 특히 **싹과 녹색으로 변한 부위**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따라서 감자와 솔라닌의 연결은 적절하다.

③ X: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은 대표적인 복어독이다. 홍합은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하면서 독소를 축적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마비성 패류독소는 **삭시톡신(saxitoxin)**이다. 따라서 이 연결은 '홍합 – 삭시톡신'으로 고친다.

④ O: 무스카린(muscarine)은 **일부 독버섯에 함유된 자연독**으로, 이를 먹으면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버섯과 무스카린의 연결은 적절하다. 다만 모든 버섯에 무스카린이 들어 있는 것은 아니다.

NoteBase

문 7. 정신보건사업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신질환자의 격리

② 건전한 정신기능의 유지증진

③ 정신장애의 예방

④ 치료자의 사회복귀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정신보건사업은 정신질환자의 **격리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정신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정신장애를 예방하며, 치료와 재활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사회복귀**를 돕는 사업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정신질환자를 사회에서 분리하는 격리 자체는 정신보건사업의 목적이 아니다. 정신보건사업은 필요한 치료와 재활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사회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지향한다.

② O: 정신보건사업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뿐 아니라 일반인의 정신건강도 대상으로 한다.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능력 등을 길러 **건전한 정신기능을 유지·증진**하는 것이 목적에 포함된다.

③ O: 정신건강을 해치는 위험요인을 줄이고 보호요인을 강화하여 **정신장애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도 목적이다. 이미 발생한 질환의 치료에만 국한되는 사업이 아니다.

④ O: 치료를 받은 사람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은 정신보건사업의 목적이다. 재활과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가정·학교·직장 등에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사회복귀**를 추구한다.

NoteBase

문 8. 감염병의 간접전파 매개체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달물

② 식품

③ 비말

④ 공기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비말전파는 기침·재채기 등으로 나온 비말이 가까운 사람의 점막에 직접 도달하는 **직접전파**이다. 공기 중에 떠 있는 비말핵 등을 흡입하는 공기전파와 구별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개달물은 병원체를 옮기는 침구·수건·기구 등의 **무생물성 물건**이다. 오염된 물건을 거쳐 병원체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므로 간접전파의 매개체에 해당한다.

② O: 병원체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면 식품을 매개로 병원체가 체내에 들어올 수 있다. 감염원에서 나온 병원체가 **식품을 거쳐 전달**되므로 간접전파에 해당한다.

③ X: 비말전파는 기침·재채기·대화 등으로 나온 비말이 가까운 사람의 눈·코·입 점막에 직접 도달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간접전파가 아니라 **직접전파**로 분류한다.

④ O: 공기전파는 병원체를 포함한 비말핵이나 먼지 등이 **공기 중에 떠 있다가 흡입**되어 이루어진다. 공기 중에 부유하는 입자를 매개로 병원체가 전달되므로 간접전파에 해당한다. 가까운 사람에게 비말이 직접 도달하는 비말전파와는 구별된다.

NoteBase

문 9. 일정한 지역 내 인구의 연령과 성별 구성을 나타내는 인구 피라미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남자의 인구수는 왼쪽에, 여자의 인구수는 오른쪽에 표시한다.

② 종형은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은 인구정지형이다.

③ 항아리형은 19세 이하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2배 이하인 인구구조이다.

④ 호로형은 생산연령 인구가 많이 유출되는 농촌형이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③의 '19세 이하'는 **'14세 이하'**로 고쳐야 한다. 항아리형은 유소년층의 비중이 작아지는 인구감퇴형으로, 14세 이하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2배 이하인 구조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인구 피라미드는 세로축에 연령을, 가로축에 각 연령층의 인구수나 구성비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남자는 왼쪽, 여자는 오른쪽**에 배치하여 성별·연령별 인구구조를 비교한다.

② O: 종형은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아** 자연적 인구증가가 거의 없는 인구정지형이다. 출생과 사망이 대체로 균형을 이루므로 인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형태이다.

③ X: 항아리형을 설명할 때 비교하는 유소년층은 **19세 이하가 아니라 14세 이하**이다. 항아리형은 14세 이하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2배 이하인 인구감퇴형이다. 낮은 출생률로 유소년층이 줄고 노년층의 상대적 비중이 커져 피라미드의 아래쪽이 좁아지는 형태를 보인다.

④ O: 호로형은 표주박형이라고도 하며, **생산연령층의 유출**이 두드러지는 농촌형이다. 청·장년층이 도시 등으로 이동하면서 해당 연령층이 차지하는 중간 부분이 잘록해진다. 생산연령층이 유입되는 도시형인 별형과 구별된다.

NoteBase

문 10. 건강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건강신념모형(Health Belief Model)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절요인에는 연령, 성별, 성격, 지식과 같은 집단 또는 개인의 특성이 해당된다.

② 인지된 장애(perceived barriers)란 특정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고 지각하는 것이다.

③ 인지된 민감성(perceived susceptibility)은 개인의 경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④ 인지된 이익(perceived benefit)이란 금연할 경우 가족이 좋아하는 모습을 떠올리는 것이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특정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고 지각하는 것'은 **인지된 민감성**이다. 인지된 장애는 건강행동을 할 때 예상되는 **비용·불편·어려움**을 뜻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조절요인은 질병과 건강행동에 대한 개인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배경 특성이다. 연령·성별 같은 인구학적 특성, 성격 같은 심리적 특성, 지식 등이 해당하며, 같은 질병이나 행동도 이러한 특성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

② X: 특정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고 느끼는 것은 **인지된 민감성**이다. 인지된 장애는 권장되는 건강행동을 실천할 때 예상하는 비용, 시간 부담, 불편함 등 행동을 방해하는 부정적 측면을 뜻한다. 질병에 걸릴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행동을 실천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을 구분해야 한다.

③ O: 인지된 민감성은 자신이 특정 질병에 걸릴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위험뿐 아니라 **과거의 질병 경험** 등 개인의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④ O: 인지된 이익은 건강행동을 하면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긍정적인 결과이다. 금연 후 가족이 기뻐하는 모습을 떠올리는 것은 **금연으로 얻을 긍정적 결과**를 예상하는 것이므로 인지된 이익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1. 역학이 추구하는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질병발생의 원인 규명

② 효과적인 질병치료제 개발

③ 질병예방 프로그램 계획

④ 보건사업의 영향 평가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역학은 인구집단에서 질병의 발생 양상과 원인을 밝히고 이를 예방·관리에 적용한다. **치료제 자체의 개발**은 의약품 개발 연구의 직접적인 과제이며, 역학이 치료 효과 평가에 활용되는 것과 구별한다.

선지별 해설

역학은 인구집단에서 건강 관련 사건의 분포와 그 결정요인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건강문제의 예방과 관리에 적용하는 학문이다.

① O: 질병발생의 원인 규명은 역학의 주요 목적이다. 특정 요인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집단의 질병 발생을 비교하여 **위험요인과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원인 규명에 필요한 근거를 얻는다.

② X: 효과적인 질병치료제 자체를 개발하는 것은 약리학과 의약품 개발 연구의 직접적인 과제이다. 역학의 목적은 질병의 분포와 원인을 밝히고 예방·관리에 적용하는 데 있다. 임상시험 등 역학적 방법으로 **치료제의 효과와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지만, 이를 치료제 자체의 개발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③ O: 질병예방 프로그램 계획에는 어떤 집단에서 어떤 질병이 많이 발생하며 어떤 위험요인을 줄여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 역학은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예방 대상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적절한 예방대책을 계획하는 데 기여한다.

④ O: 보건사업이 질병 발생이나 건강수준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는 것도 역학의 목적이다. 사업 시행 전후 또는 사업 대상 집단과 비교 집단의 건강지표를 분석하여 **사업의 효과**를 판단하고 개선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한다.

NoteBase

문 12. 역학 연구방법 중 코호트 연구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질병발생의 위험도 산출이 용이하다.

② 위험요인의 노출에서부터 질병 진행 전체 과정을 관찰할 수 있다.

③ 위험요인과 질병발생 간의 인과관계 파악이 용이하다.

④ 단기간의 조사로 시간, 노력, 비용이 적게 든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의 '단기간의 조사로 시간, 노력, 비용이 적게 든다'는 코호트 연구의 일반적인 장점이 아니다. 특히 전향적 코호트 연구는 질병 발생을 기다리며 대상자를 추적해야 하므로 **시간·노력·비용이 많이 든다**.

선지별 해설

① O: 코호트 연구는 위험요인 노출군과 비노출군을 추적하여 각 집단에서 새로 발생한 환자를 확인한다. 따라서 각 집단의 **질병 발생위험을 직접 산출**하고, 두 집단의 위험을 비교하는 상대위험도도 구할 수 있다.

② O: 전향적 코호트 연구는 위험요인에 노출된 상태를 확인한 뒤 질병 발생과 경과를 추적한다. 따라서 **노출에서 질병 발생·진행으로 이어지는 시간적 과정**을 관찰할 수 있어 질병의 자연사를 파악하는 데 유리하다.

③ O: 위험요인 노출이 질병 발생보다 먼저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인과관계 판단에 필요한 **시간적 선후관계**를 파악하기 쉽다. 다만 관찰연구이므로, 노출과 질병 모두에 영향을 주는 교란요인 등을 검토해야 하며 연관성이 관찰되었다고 인과관계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④ X: 특히 전향적 코호트 연구는 대상자의 질병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장기간의 추적과 많은 시간·노력·비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잠복기가 긴 질병일수록 결과를 확인하기까지 오래 걸릴 수 있다. 기존 기록을 이용하는 후향적 코호트 연구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이를 코호트 연구 전체의 일반적 장점으로 볼 수는 없다.

NoteBase

문 13. 리케차에 의한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옳은 것은?

① 탄저
② 렙토스피라증
③ 큐열
④ 브루셀라증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큐열의 원인균은 **Coxiella burnetii**로, 과거 리케차로 분류되었다. 문항의 '리케차'는 이러한 전통적 분류에 따른 표현이다.

개념 구분

큐열은 Coxiella burnetii 감염으로 발생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이다. 감염된 소·양·염소 등의 분만 부산물이나 배설물로 오염된 먼지를 흡입하여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다. 이 균은 과거 Rickettsia burnetii로 불리며 리케차로 분류되었으므로, 문항의 전통적 분류에 해당하는 질환은 큐열이다. 다만 **현재는 리케차와 구별하여 Coxiellaceae과로 분류**한다.

다른 후보도 인수공통감염병이지만 원인 병원체가 다르다. 탄저는 탄저균(Bacillus anthracis), 렙토스피라증은 렙토스피라균(Leptospira), 브루셀라증은 브루셀라균(Brucella)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이 문항에서는 동물과 사람 사이에 전파된다는 공통점보다 **원인 병원체의 구분**이 결정적인 기준이다.

NoteBase

문 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명시된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으로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① 일본뇌염, 폐렴구균, 성홍열
② 인플루엔자, A형간염, 백일해
③ 홍역, 풍진, 결핵
④ 디프테리아, 폴리오, 파상풍

정답 1번

①

일본뇌염과 폐렴구균은 필수예방접종 대상이지만, **성홍열은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2, 2014.3.18, 2016.12.2, 2018.3.27, 2020.8.11, 2023.3.28, 2023.6.13>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12.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3. 폐렴구균
14. 인플루엔자
15. A형간염
16.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7.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18.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NoteBase

②

인플루엔자, A형간염, 백일해는 모두 법률에 명시된 필수예방접종 대상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2, 2014.3.18, 2016.12.2, 2018.3.27, 2020.8.11, 2023.3.28, 2023.6.13>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12.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3. 폐렴구균
14. 인플루엔자
15. A형간염
16.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7.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18.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NoteBase

③

홍역, 풍진, 결핵은 모두 법률에 명시된 필수예방접종 대상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2, 2014.3.18, 2016.12.2, 2018.3.27, 2020.8.11, 2023.3.28, 2023.6.13>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12.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3. 폐렴구균
14. 인플루엔자
15. A형간염
16.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7.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18.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NoteBase

④

디프테리아, 폴리오, 파상풍은 모두 법률에 명시된 필수예방접종 대상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2, 2014.3.18, 2016.12.2, 2018.3.27, 2020.8.11, 2023.3.28, 2023.6.13>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12.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3. 폐렴구균
14. 인플루엔자
15. A형간염
16.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7.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18.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NoteBase

문 15.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유형으로 옳은 것은?

① 변이형

② 현금배상형

③ 관리의료형

④ 제3자 지불제형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에서는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보험자 부담 진료비를 지급**한다. 환자와 의료기관 외의 제3자가 비용을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제3자 지불제형이다.

개념 구분

제3자 지불제형: 환자와 의료기관 외에 보험자가 진료비 지급의 주체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에서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내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험자 부담 진료비의 심사를 청구한다. 심사 결과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하므로, **보험자가 의료기관에 직접 비용을 지급**하는 제3자 지불제형에 해당한다.

현금배상형과의 구분: 현금배상형은 환자가 진료비를 먼저 지급한 뒤 보험자에게 청구하여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제3자 지불제형과의 핵심 차이는 **보험자가 환자에게 환급하는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지**에 있다.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낸다는 사실만으로 현금배상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변이형과의 구분: 변이형은 보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소유하거나 계약하여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험과 의료공급을 결합**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기본 구조에서는 공단이 보험자, 의료기관이 진료 제공자로 구분된다.

관리의료형과의 구분: 관리의료형은 보험자가 공급자와 계약한 의료기관망을 바탕으로 **의료이용·비용·질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의료기관이 법에 따라 요양기관이 되는 당연지정제를 바탕으로 운영되며, 보험자의 선택적 계약망을 중심으로 하는 관리의료형과 구별된다.

NoteBase

문 16. 캠필로박터 식중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가 섞인 설사를 할 수 있다.

② 원인균은 호기적 조건에서 잘 증식한다.

③ 닭고기에서 주로 발견된다.

④ Guillain-Barre syndrome을 일으킬 수 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캠필로박터는 **미호기성균**으로, 대기보다 산소 농도가 낮은 조건에서 잘 증식한다. 따라서 '호기적 조건에서 잘 증식한다'는 표현을 '미호기적 조건에서 잘 증식한다'로 고쳐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캠필로박터에 감염되면 설사, 복통, 발열 등이 나타나며, 설사에 **혈액이 섞일 수 있다**. 따라서 피가 섞인 설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감염 증상에 부합한다.

② X: 원인균은 **대기보다 산소 농도가 낮은 미호기적 조건**에서 잘 증식한다. 미호기성은 적은 양의 산소를 필요로 한다는 뜻이며, 산소가 전혀 없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선지의 '호기적 조건'은 '미호기적 조건'으로 고쳐야 한다.

③ O: 캠필로박터는 닭 등 가금류의 장관에 존재할 수 있으며, **닭고기는 주요 감염 매개 식품**이다. 덜 익힌 닭고기를 먹거나 생닭고기에 의해 교차오염된 식품을 먹으면 감염될 수 있다.

④ O: 캠필로박터 감염 후 드물게 **길랭-바레 증후군(Guillain-Barre syndrome)**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면역계가 자신의 말초신경을 공격하여 근력 약화나 마비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감염 후 합병증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7.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상 환경기준의 대기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벤젠
② 미세먼지
③ 오존
④ 이산화탄소

정답 4번

①

벤젠은 **대기 환경기준 항목에 포함**된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1. 대기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8fOcFgxkmrOT5mTDTI7bcmNLeAzgzgRs.webp

비고
1. 1시간 평균치는 999천분위수(千分位數)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8시간 및 24시간 평균치는 99백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미세먼지(PM-10)는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3. 초미세먼지(PM-2.5)는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NoteBase

②

미세먼지(PM-10)는 **대기 환경기준 항목에 포함**된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1. 대기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8fOcFgxkmrOT5mTDTI7bcmNLeAzgzgRs.webp

비고
1. 1시간 평균치는 999천분위수(千分位數)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8시간 및 24시간 평균치는 99백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미세먼지(PM-10)는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3. 초미세먼지(PM-2.5)는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③

오존은 **대기 환경기준 항목에 포함**된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1. 대기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8fOcFgxkmrOT5mTDTI7bcmNLeAzgzgRs.webp

비고
1. 1시간 평균치는 999천분위수(千分位數)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8시간 및 24시간 평균치는 99백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미세먼지(PM-10)는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3. 초미세먼지(PM-2.5)는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NoteBase

④

대기 환경기준 항목에는 일산화탄소가 포함되지만, **이산화탄소는 포함되지 않는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1. 대기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8fOcFgxkmrOT5mTDTI7bcmNLeAzgzgRs.webp

비고
1. 1시간 평균치는 999천분위수(千分位數)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8시간 및 24시간 평균치는 99백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미세먼지(PM-10)는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3. 초미세먼지(PM-2.5)는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NoteBase

문 18. 내분비계 교란물질(환경호르몬)과 오염 경로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다이옥신 - 폐건전지

② 프탈레이트 - 플라스틱 가소제

③ DDT - 합성살충제

④ 비스페놀A - 합성수지 원료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다이옥신은 폐건전지의 대표 오염물질이 아니라, **폐기물 소각이나 일부 산업공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부산물**이다. 폐건전지는 종류에 따라 수은·카드뮴 등 중금속 오염과 관련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다이옥신은 **폐기물 소각·일부 산업공정에서 생성되는 부산물**이다. 특히 적절히 관리되지 않는 소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폐건전지와 연결할 대표적인 오염물질은 전지 종류에 따라 포함될 수 있는 수은·카드뮴 등 중금속이다.

② O: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드는 가소제**로 사용된다. 특히 폴리염화비닐(PVC) 제품에 사용되며, 제품에서 빠져나와 환경이나 인체에 노출될 수 있다.

③ O: DDT는 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된 **유기염소계 합성살충제**이다. 환경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아 사용 후에도 잔류할 수 있으므로 합성살충제와의 연결이 적절하다.

④ O: 비스페놀A는 **폴리카보네이트와 에폭시수지의 원료**로 사용된다.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만드는 가소제로 쓰이는 프탈레이트와 달리, 합성수지를 만드는 원료라는 점을 구별한다.

NoteBase

문 19. 산업재해를 나타내는 재해지표 중 강도율 4가 의미하는 것은?

① 근로자 1,000명당 4명의 재해자

② 1,000 근로시간당 4명의 재해자

③ 근로자 1,000명당 연 4일의 근로손실

④ 1,000 근로시간당 연 4일의 근로손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강도율은 **1,000 근로시간당 근로손실일수**를 나타낸다. 강도율 4는 한 해의 총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000시간당 4일의 근로손실이 발생했다는 뜻이다.

개념 구분

강도율은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의 심한 정도를 근로손실일수로 나타내는 지표이다. 연간 총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손실일수의 비율을 1,000시간 기준으로 환산한다. 따라서 강도율 4는 해당 연도의 **총근로시간 1,000시간당 근로손실이 4일**이라는 의미이다.

선지를 구분할 때는 기준과 측정 대상을 함께 확인한다. 기준은 근로자 1,000명이 아니라 1,000 근로시간이고, 측정 대상은 **재해자 수가 아니라 근로손실일수**이다. ①·②는 재해자 수를 제시하고, ③은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삼으므로 강도율의 의미와 다르다.

NoteBase

문 2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사망자가 1명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가 동시에 10명 발생한 재해

④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5명 발생한 재해

정답 4번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는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는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는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NoteBase

④

직업성 질병자 발생에 따른 중대재해의 기준은 **동시에 10명 이상**이다. 동시에 5명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NoteBase